

1. 목적

본 교회, 버지니아 연회, 연합감리교 교단, 한인 교회들과의 연대를 활성화하고 동역의 기회를 찾아 실천한다.

2. 역할/주요업무 처리 절차

- 1) 연회나 지방회의 행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 2) 연회를 통해 가능한 사역들을 연구하고 추진한다.

3. 조직/임원

- 1) 당연직으로 담당목사와 평신도대표가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한다.
- 2) 사역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는 3년이며 매년 1/3의 인원만 교체한다.
- 3) CM위원회의 특수성과 연속성을 위해 위원장은 위원회 안에서 선출한다.
- 4) 자체 내에서 서기를 선출,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도록 한다.

4. 책임

연회에 참석하고 연회에서 교회를 대표함으로써 연회와 우리교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본 교회의 활동을 UMC에 알리고 홍보하도록 노력하며, 반면 UMC의 상황과 결정사항 등을 교인들에게 알리므로 연합감리교의 연대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교역자 연회원(¶32.1)과 함께 우리교회를 대표하여 연회에 참석한다.
평신도 연회원은 연회의 모든 세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장정이 정하는 바(33)에 따라 표결권과 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a) 표결권 — 모든 현장 개정안에 대한 표결권
 - b) 선출권 — 총회, 지역총회, 해외지역 총회에 보낼 교역자와 평신도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
- 2) 그러나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신도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 a) 교역자의 안수, 자질 및 연회 관계에 관한 사항
 - b) 다만 연회 안수 사역국의 구성원(¶1421)인 평신도가 평신도 연회원일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대해 투표권을 갖는다 (¶133).

- 3) 평신도 연회원은 교역자들과 더불어 연회의 결정과 프로그램, 정책 등을 교회 합동 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진다. 보고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연회 종료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선출

- 1) 평신도 연회원과 그 대리 연회원은 연합감리교회의 교인으로서 최소한 2년 이상 충실한 덕망을 지닌 고백 교인으로 있어야 하며, 선출되기 직전 최소한 4년 동안 적극적인 참여자로 있어야 한다 (§251.2).
- 2) 평신도 연회원은 장정이 정한 바에 따라 (§249) 구역회 또는 지방감리사의 허락을 받아 소집된 교회 총회에서 (i) 공천위원회 공천 또는 회의장에서의 추천과 (ii)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3) 평신도 연회원의 수는 해당년도 구역회의 교역자 수와 동 수로 하고 (§32), 9명의 CM위원중 투표권을 행사하는 연회원은 CM위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또한, 투표권이 없는 CM위원도 연회에 참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한다.
- 4) 구역을 대표한 평신도 연회원이 그 구역에 속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떤 이유로 직무를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대리 연회원이 선출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251.2).
- 5) 특히 연회기간에 평신도 연회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대리 연회원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 경우 대리 연회원은 연회의 평신도 회원으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연회의 토론 및 결의 내용에 대한 보고 책임을 진다.
- 6) 대리 평신도 연회원은 따로 임기를 두지 않으며 평신도 연회원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적절한 인원을 선발한다.

6.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

연회에 참석하여 투표권 행사 등을 통해 교회를 대표하게 된다. 따라서 연회 참석 이전 어느 정도의 사전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숙고한 결정 (informed decision)을 할 것이 기대된다. 이를 위한 권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연회 참석 이전에 장정의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습득하며 구역회 등에서 주최하는 훈련에 참석한다.
- 2) 연회의 토의 프로세스 및 절차를 숙지한다.
- 3) 교역자, 평신도 대표 및 교인들과 만나 연회에서 쟁점이 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사전에 교환한다.
- 4) 연회의 토의를 경청함으로써 투표권의 행사 시 숙고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평신도 연회원은 연회의 회원으로서 각 개인이 독립적 투표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우리교회나 같은 구역회의 다른 평신도 연회원들과 상반된 방향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청장년, Youth에게 연합감리교의 연대성과 참여를 꾸준히 교육하며 홍보한다.

7. 자격 및 훈련

- 1) 영어 구사력, 교회 연륜 등이 필요하다.
- 2) 매년 있는 Bi-district 지방임원수련회에 참석하며, 많은 교인이 참석하도록 등록금 지원 등, 적극 홍보하고 권장한다.
- 3) 매 분기에 있는 회의에 참여하여 능동적 주체로 활성화되도록 돕는다.
- 4) 연회의 행사나 회의에는 반드시 참여하고, 교회의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힘쓴다.